

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사업자	업체명 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보고자 (직급/성명)	전화번호/팩스번호
	주소	전자우편
제품정보	제품명	모델명
	상표명	인증번호 (신고확인번호)
	제조기간 (수입기간)	제조수량 (수입수량)
	판매기간	판매수량
	[] 안전인증대상 [] 안전확인대상 []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	
보고 유형	1. 외국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[] 2.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[] 3.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1호 또는 2호의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[]	
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		
수거 등의 내용과 실적		
수거 등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		
재발방지 대책		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수거등의 조치를 하였기에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

(서명 또는 인)